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7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에 현행 규정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 지고자 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변경 내용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(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)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